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927
----------	-------

발의연월일 : 2025. 6. 18.

발 의 자 : 이성윤 · 정동영 · 김병주
양부남 · 김문수 · 서영교
권향엽 · 전현희 · 서미화
윤준병 · 박균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가정 밖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가정 · 학교 · 사회로의 복귀 또는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임. 이들 시설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입소 대상으로 하며, 입소 중인 청소년이 24세를 초과하는 경우 퇴소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런데 이들 시설 입소 청소년이 25세가 되어도 당장 원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렵거나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주거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소할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 「아동복지법」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이 18세를 초과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25세에 이를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25세가 되어도 학업이나 취업준비 등을 위해 입소기간을 더 연장할 필

요가 있는 경우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입소 시설의 근거 법률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가 달라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 입소 중인 청소년이 24세를 초과하더라도 학업, 취업준비 등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의 학교·사회 복귀와 자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제32조의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을 각각 제32조의3 및 제32조의4로 하고,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청소년쉼터 등의 퇴소조치 등) ① 청소년쉼터(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입소 중인 청소년이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연령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청소년을 해당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입소 중인 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본인이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그 청소년의 입소기간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다만,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입소 중인 청소년을 계속하여 보호 또는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2조의2(청소년쉼터 등의 퇴소 조치 등) ① 청소년쉼터(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입소 중인 청소년이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연령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청소년을 해당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퇴소시켜야 한다.</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입소 중인 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본인이 입소기간을 연장할</u>

	<u>의사가 있는 경우 그 청소년의 입소기간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u>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다만,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입소 중인 청소년을 계속하여 보호 또는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u>제32조의2</u>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생략)	<u>제32조의3</u>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현행 제32조의2와 같음)
<u>제32조의3</u> (자립지원) (생략)	<u>제32조의4</u> (자립지원) (현행 제32조의3과 같음)